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33조제2항제1호	300만원
2. 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자	법 제33조제2항제2호	300만원
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	법 제33조제2항제3호	300만원
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	법 제33조제1항	1,000만원
5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33조제2항제4호	300만원
6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33조제2항제5호	300만원